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3월 9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제정이유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여 체계적인 교통소통대책 수립과 교통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 가.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20일이하 점용하는 특별시도로써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상·하수도·가스관 공사 및 전력·통신공사 등을 대상으로 함 (안 제3조).
- 나.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도로점용허가 또는 굴착허가 신청 전에 공사기간, 공사안내표지, 교통통제표지 등 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4).
- 다.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안 제8조).
- 라. 자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안 제9조).

라.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조치 함 (안 제12조).

Ⅲ. 검토의견

1. 조례 제정 의의 및 배경

○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도로법」 제40조 제1항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등 점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과 관련하여 1개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위법규에 제정권이 위임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2006. 8. 16 서울시부터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강화 방침」이 통보되어 조례제정 업무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하려는 이 조례(안)은 정의(안 제2조), 적용대상(안 제3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안 제4조),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안 제8조)를 포함하여 13개의 조문과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동 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2차로(…생략) 이상의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區道)와 그 점용기간이(…생략) 20일 이하의 특별시도(特別市道)를 대상으로 하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공사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호에서 “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로 적용대상을 포괄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아래 수정의견과 같이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로 보다 명확하게 표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조(적용대상) (생략) 1.~3. (생략) 4. <u>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u>	제3조(적용대상) (원안과 같음) 1.~3. (원안과 같음) 4. <u>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u>

○ 참고로 2005년도 도로점용공사 기간별 허가 건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91건으로서 구도는 110건, 특별시도는 181건이며, 또한 2006년도 도로점용공사 관련 점용료 부과·징수 내역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점용료 부과건수는 960건이고, 부과액은 1억 7천 4,784천원으로서 가스관·전력·통신공사 등 대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시행되었고, 개인에게 부과되는 일시점용허가(각종 건축공사장)는 183건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2007년도에 교통소통대책 관련 적용대상공사는 300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표 1>

2005년도 도로점용공사 기간별 허가 건수

계	구 도			특 별 시 도		
	소 계	15일 미만	15일 이상	소 계	10일 미만	10일 이상 ~20일이하
291	110	77	33	181	126	55

둘째,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5항에서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위법규인 규칙에 위임조항을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의 전문성·탄력성 등 행정입법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세부적·기술적인 사항은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동조 제5항과 같이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규칙에서 규정할 내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관계공무원의 범위, 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자문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회의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 등이 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9조에서는 자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위원장이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에게 있다 할 것으로 동 조문을 다음 수정의견과 같이 전문개정하여 표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정의견

안 제9조(업무의 협조) 위원장은 교통소통대책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9조(의견청취) 자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협조) 위원장은 교통소통대책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표 2>

도로점용공사 관련 점용료 부과·징수 내역

2006. 1. 1~12. 31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연월	공사명	사행자	점용료 부과		점용료 징수	
			권수	금액	권수	금액
합 계			960	174,784	670	165,429
1	도로신설·개설 ·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개인업체	6	844	6	844
2	상수도 공사		0	0	0	0
3	하수도 공사	개인	10	574	10	574
4	가스관 공사	서울도시가스 에스코	418	6,424	418	6,424
5	전력 공사	한전중부지점	192	6,677	23	3,928
6	통신 공사	파워콤 하나로텔레콤 KT혜화지점 KT강북망건설 국 KT홍제지점 KT을지지점 KT광화문지점 SK네트웍스	151	10,483	32	4,077
7	일시점용허가 (각종건축공사장)	개인	183	149,782	181	149,582

IV. 관계법규

○ 도로법

第14條 (特別市道·廣域市道) 特別市道·廣域市道는 特別市 또는 廣域市 區域안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道路로서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이 그 路線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自動車專用道路
2. 幹線 또는 補助幹線機能 등을 수행하는 道路
3. 都市내 主要地域간이나 인근 都市 및 主要地方간을 連結하는 道路
4. 第1號 내지 第3號외에 都市機能維持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道路

第17條의2 (區道) 區道는 特別市 또는 廣域市 區域안의 道路중 特別市道·廣域市道를 제외한 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안의 洞간을 連結하는 道路로서 管轄 區廳長이 그 路線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第40條 (道路의 占用) ①道路의 區域안에서 工作物·物件 기타의 施設을 新設·改築·變更 또는 除去하거나 기타의 目的으로 道路를 占用하고자 하는 者는 管理廳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規定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公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의 占用許可를 받은 者가 道路의 굴착 기타 形質變更이 수반되는 工事を 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廳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地下埋設物(이하 "主要地下埋設物"이라 한다)의 設置工事を 한 때에는 竣工圖面을 管理廳에 제출하여야 하며, 管理廳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保管·관리하여야 한다.<新設 1993.3.10, 1995.12.6>

④管理廳은 主要地下埋設物이 설치된 道路에 대하여 掘鑿工事を 수반하는 占用許可를 하는 때에는 당해 主要地下埋設物의 管理者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新設 1995.12.6>

⑤삭제 <1999.2.8>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의 占用許可를 받은 者가 主要地下埋設物이 있는 道路의 掘鑿工事を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主要地下埋設物의 管理者의 立會하에 施行하여야 한다.<新設 1995.12.6>

제74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8조·제34조·제40조·제45조·제47조·제50조제4항·제50조의4·제53조·제54조·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6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4조·제40조·제54조 또는 제54조의6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

[전문개정 2006.12.28]

제75조 (공익을 위한 처분 <개정 2006.12.28>)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게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道路의 狀況의 變更으로 因하여 必要한 境遇
2. 道路에 關한 工事を 爲하여 必要한 境遇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第8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削除 <1995.1.5>
2. 削除 <1995.1.5>
3. 삭제 <2006.12.28>
4. 第74條 또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命令에 위반한 者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점용의 허가신청)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생략 : 별표1>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5.10.16, 1993.8.14, 1994.9.16, 1996.7.16, 1999.8.6>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8. 삭제 <1999.8.6>

②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8.14, 1994.12.23, 2002.5.6>

제24조의4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등) ①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당해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기간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5.10.16, 1996.7.16, 1999.8.6, 2007.1.5>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개정 1999.8.6, 2002.5.6, 2004.7.20>

도로점용기준(제24조제1항관련)

4. 공사방법

- (1)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1개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69조 (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3일 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또는 수도관 파열 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③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협의 등) ①도로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다만, 보도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보도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를 한 후 즉시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